

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정의(안 제2조)

- “평창군번영회”란 (사)평창군번영회와 그 회원단체(읍·면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나. 지원(안 제3조)

-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 발전을 위한 군 번영회의 포럼, 토론회 등 사업비
2. 군번영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활동 사업비
3. 군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

4.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포상(안 제4조)

-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5. 1. 23. ~ 2. 12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, 원안동의

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(이하 "군번영회"라 한다)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"군번영회"란 (사)평창군번영회와 그 회원단체(읍·면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군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 발전을 위한 군번영회의 포럼, 토론회 등 사업비
2. 군번영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사업비
3. 군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
4.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표창 등)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 「평창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비용발생 요인 : 조례안 3조 지원 근거에 따른 사업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(평창군번영회는 민간
경상보조사업(舊 사회단체보조금) 지원 단체로, 사업비는 1천
만원 미만임.)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